

하남시 영구임대·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9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이 삭제됨에 따라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으로 일부 조문 변경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3. 31. ~ 2025. 4. 21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영구임대·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영구·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최 현 숙
	팀장 직위·성명	생활보장팀장 김 윤 정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강 노 원 (031-790-577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에 따라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·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385호, 2024. 3. 19., 타법개정]

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·개량,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.